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66
----------	-------

발의연월일 : 2023. 11. 22.

발 의 자 : 전봉민 · 김도읍 · 김용판
김 웅 · 김태호 · 박성민
서병수 · 서일준 · 이인선
이종성 · 정운천 · 최영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등(이하 “취약점 분석·평가기관”이라 함)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무자격 업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바 있음.

따라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국방·치안·금융·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를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약점 분석·평가기관이 아닌 기관에 수행하게 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0조제2항제3호 신설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반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등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2. 제9조제5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요구를 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① ~ ③ (생략)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⑤ · ⑥ (생략) <u><신설></u>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u>제9조의2(위반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등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u>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있다.

1.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2. 제9조제5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요구를 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생 략)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시정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u> <u>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	---